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2024. 4. 30.

행정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4월 9일

나. 발 의 자: 김지연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4년 4월 22일

라. 상정일자: 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4. 4. 26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김지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영등포구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력 있고 재능이 충만한 우수 체육인재를 발굴 및 육성함과 동시에 우리 구 인구 유입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함. 아울러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의 전인교육을 강화하여 명문 운동부의 명맥과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 영등포구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(안 제1조 ~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(안 제3조)
- 예산지원 사업 범위 및 중복 지원 제한을 규정함 (안 제5조 ~ 제6조)
- 학생선수 진로 및 인권보호를 위한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교육 실시를 규정함

(안 제7조)

- 관련 기관, 단체 및 기업 등과의 후원·협력 체계 구축을 규정함 (안 제8조)
-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9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-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(區) 학교운동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실있는 학교운동부 운영을 도모하고, 학생선수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,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.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 - 안 제2조(정의)에서 “학교”를 「초·중등학교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정의하고, “학생선수”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으로 규정함.
  - 안 제5조(지원) 및 제6조(지원 방법)에서 학교운동부 또는 학생선수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, 중복 지원 금지에 대하여 명시하였음.
  - 안 제8조(후원·협력 체계 구축)에서는 학교운동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, 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.
- 검토 결과
  - 본 제정조례안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육성에 대한 책무를 수행하고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5조의2에 근거하여 학교운동부에 지원하는 것과는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선수에게 보다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보임.
 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에 따라 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은 자치사무로 보고 있고, 「학교체육 진흥법」 제11조제7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기에 상위법률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.
  - 결과적으로 학교운동부는 엘리트 운동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

하는 것으로 영등포구의 명예와 인지도를 제고할 것으로 보이며, 지·덕·체 골고루 갖춘 학생선수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짐. 따라서 지방 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운동부에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은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됨.

#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

## 조례안

(김지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1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4. 4. .

발 의 자: 김지연 의원

### 1. 제안이유

영등포구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통해 실력 있고 재능이 충만한 우수 체육인재를 발굴 및 육성함과 동시에 우리 구 인구 유입 활성화를 모색하며,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의 전인교육 강화와 복지증진을 통해 명문 운동부의 명맥과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나감으로써 영등포구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(안 제3조)

다. 예산지원 사업 범위 및 중복 지원 제한을 규정함 (안 제5조 ~ 제6조)

라. 학생선수 진로 및 인권보호를 위한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교육

실시를 규정함 (안 제7조)

마. 관련 기관, 단체 및 기업 등과의 후원·협력 체계 구축을 규정함  
(안 제8조)

바.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9조)

### 3. 개정안: “별첨”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2호라목,  
「학교체육 진흥법」 제3조, 제7조제1항, 제11조제  
7항, 제15조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24. 4. 9.~ 4. 14.) 결과: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학교운동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 학교운동부의 활성화와 우수한 체육 인재 발굴·육성 및 학생선수의 복지 증진과 전인교육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교”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안에 소재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2. “학교운동부”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.
3. “학생선수”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학생운동부 활성화 및 학생선수 복지 증진과 전인교육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학생운동부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지원) 구청장은 학교운동부 또는 학생선수에게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학교운동부 장비 및 용품 지원

2. 학생선수 학습 및 교육

3. 해당 체육종목 분야 멘토 지원

4. 학교운동부 대회 참가 및 훈련·연수

5. 학교운동부 홍보 및 후원

6. 학교장 추천을 받은 우수 학생선수 장학금 지급

7.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
제6조(지원 방법) ①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, 규모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국가나 서울특별시로부터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7조(교육) 구청장은 학생선수의 진로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생선수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8조(후원·협력 체계 구축) 구청장은 학교운동부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, 단체 및 기업 등과 후원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